

제6장 경쟁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법」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소비자법」 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제6.2조

목적

이 장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의 유지를 통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경쟁법의 발전과 이행에 관한 양자 협력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6.3조

기본 원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이행한다.
2.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 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개발, 수립, 관리 및 집행할 주권적 권리, 그리고
 - 나. 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존재하는 역량과 발전 수준의 중대한 차이

제6.4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¹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고 그러한 경쟁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¹ 그러한 행위의 예는 가) 반경쟁적 합의,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

6.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국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위 가호1)목부터 3)목까지의 어떠한 사유에 기초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능한 경우 서면으로)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

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6.5조

협력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들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

나.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논의하는 것

다. 요청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라.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제6.6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장은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요청의 목적, 그리고

나. 요청한 정보의 사용 목적

3. 양 당사국 간 비밀 정보의 공유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다.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국은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 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인 또는 실체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제6.7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안임에 동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 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 라.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6.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9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6.9조

협의

양 당사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6.10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제6.11조

공기업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받은 기업에 대하여,
 -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6.4조^{3,4}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이 특별히 자신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²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³ 이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제6.4조제4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된 법과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4조제4항과 제6.11조제2항가호는 정당한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기업에 대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